
정기감사 결과 보고서
(2020학년도 - 연구산학협력단)

2021. 1.

성신여자대학교 법무감사팀

1. 개 요

□ 목적

- 감사를 통하여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를 내실화 하고, 감사 대상 부서의 주기능·임무와 조직·인사·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·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·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감사규정 전면 개정 및 법무감사팀 업무 개편 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감사로써 감사제도를 점검하고, 정기감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분야에 대하여 교육부 감사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착안사항을 선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음.

□ 감사 실시 개요

- 감사대상 : 연구산학협력단 사무 전반
- 관련부서 : 연구산학협력단 전부서
- 감사기간 : 2020. 12. 14(월) ~ 2020. 12. 21(월)
- 중점사항 : 교육부 감사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착안사항 선별

2. 감사 결과

□ 감사 결과 요약

감사분야	지적사항	감사처분 (통보)
직원인사·복무	.	.
예산·회계 (연구비 포함)	2	.
구매·계약	1	.
재 산 관 리	1	1
기 타	2	2
합 계	6	3

□ 감사분야별 감사 결과 - 지적사항

- (기타)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 미흡 교육부 감사 사례 (연세대·고려대·홍익대·대구카톨릭대 등)
 - 2011.1.1.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연구산학협력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‘연구노트지침’을 반영하여 ‘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’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하고(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항), 연구산학협력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원칙적으로 30년간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(연구노트지침 제11조 제1항), 연구산학협력단은 ① ‘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는 있지만, ②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연구노트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 받거나 보관하지 않는 등 아무런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.

- (재산관리) 연구도서 관리 등 부적정 교육부 감사 사례 (한동대·한국산업기술대·용인대·한국국제대 등)
 - 교내연구비로 구입한 연구도서의 소유권은 대학에 있고(교내연구비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), 교외연구비로 구입한 연구도서의 소유권은 지원기관과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연구산학협력단에 있으므로(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 제20조 제1항) 연구책임자는 대학 또는 연구산학협력단에 귀속 시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, 연구도서를 구입한 연구책임자는 물론 대학 및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도서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음.

- (기타) 연구 이해관계 신고제도 등 개선 필요 교육부 감사 사례 (연세대·고려대)
 - 주관연구기관인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(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제1항), 연구산학협력단은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전신고제도, 직무회피제도 등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히는 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○ (예산·회계) 산학협력단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대학제출 기한 미준수

- 산학협력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 회계의 예산안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(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6조 제1항), ① 2019년 예산안을 2019.2.13.에, ② 2020년 예산안은 2020.2.10.에 대학에 제출함으로써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음.
- 산학협력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(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36조 제1항), 2019년 결산서 등을 2020.5.6.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하고, 2020.5.8. 대학에 제출함으로써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음.

○ (예산·회계) 보상금 지급 절차 부적정

-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대학 소속의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(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), 비록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되더라도 법령에 의해 산학협력단장이 대학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급하여야 함(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)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대학 소속 교원 1인에 대하여 2019년 및 2020년에 보상금 각 2,161,450원, 3,104,030원을 지급하면서 대학의 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음 (단, 2020.8. 이후 대학 소속 교직원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대하여는 대학의 장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음.).

○ (구매·계약) 수의계약 부적정

- 대학은 물품구매 및 용역의 예정가격이 20,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의 체결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(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35조 제3항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호 가목 2), 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 규정 제31조 제3호),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(물품구매 및 시설공사 계약 규정 제32조), 연구

산학협력단도 관련 규정의 해석(연구산학협력단 운영세칙 제9조) 및 업무 관행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 체결 제한을 준수하여야 함. 그럼에도 불구하고, 2020.☆.☆. (주)○○○○○와 계약금액 20,000천원으로 하는 ‘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’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(연구)계획서에 명시된 업체라는 이유로 비교 견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함.

□ 감사 처분 (별지 참조)

별지 **감사 처분**

지적건명	지적 내용	처분 의견
1. 연구노트 관리 미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되었음에도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노트와 관련된 자료들을 미제출·미보관 <p>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항】 【연구노트지침 제11조 제1항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(연구산학협력단) - 적절한 조치 및 방지 대책 등을 검토하기 바람.
2. 연구도서 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부연구비를 포함한 연구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구입한 연구도서를 대학에 미귀속·미관리 <p>【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리규정 제20조 제1항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(연구산학협력단) - 산학협력단 회계로 구입한 연구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.
3. 연구 이해관계 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(예컨대 친족, 지도교수 등)를 사전에 밝히는 등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<p>【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제1항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(연구산학협력단) - 사전신고제 등 제도 마련을 검토하기 바람.

※ 그 외 지적사항은 내부감사규정 제18조에 따라 현지조치함.